

第243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8 號

國會事務處

2003年11月21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18次本會議)

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3.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4. 中小企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5.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關한특별조치법안
7.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8.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9.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10.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11.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12.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代案)
13. 國軍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
14. 新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附議된案件

- o 의사일정상정의건 ..... 2
- 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전재희·홍사덕·정병국·박창달·오세훈·김홍신·정재문·김정숙·안택수·김만제·김부겸·김희선·박관용·이연숙·최명현·김락기·이재오·박인상·김경천·이주영·강숙자·유재건·심재철·권오을·이근진·정범구·한승수·손희정 의원 발의) ..... 2
- 2.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3
- 3.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강봉균·강운태·구종태·김영환·김형오·김효석·설송웅·송영길·신기남·이상희·이종걸·임종석·장재식·정동채 의원 발의) ..... 4
- 4. 中小企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4
- 5.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4
- 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關한특별조치법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강재섭·박종근·김만제·이해봉·박승국·손희정·김성조·김찬우·이병석·정창화·박시균·김광원·이원형·안택수·박세환·백승홍·윤영탁·현승일·박창달·이상득·주진우·이인기·임인배·이상배·김일윤·박근혜·신영국·박재욱·권오을·박헌기·이한구·임진출·강신성일 의원 발의) ..... 5
- 7.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해구 의원 대표발의)(이해구 의원 외 29인 발의) ..... 6
- 8.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6
- 9.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6

10.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6
11.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6
12.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8
13.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 .....	8
14.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9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11
o 5분자유발언 .....	11

(14시19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상정의건

(14시2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과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오늘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정기국회가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거를 의식하면 본회의를 열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이 1125건입니다. 다른 안건을 포함하면 12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유는 15대 동기에 비해서 의원들의 법안입법 제출 내용이 무려 73%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1764건이 의원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법률안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또한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전재희 · 홍사덕 · 정병국 · 박창달 · 오세훈 · 김홍신 · 정재문 · 김정숙 · 안택수 · 김만제 · 김부겸 · 김희선 · 박관용 · 이연숙 · 최명헌 · 김락기 · 이재오 · 박인상 · 김정천 · 이주영 · 장숙자 · 유재건 · 심재철 · 권오을 · 이근진 · 정범구 · 한승수 · 손희정 의원 발의)

(14시2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威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威承熙 법제사법위원회 威承熙 의원입니다.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하여 진술 상황을 녹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할 때보다 용이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특칙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하고, 법원

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증거보전의 특례 등 기존 규정에 대한 보완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소환조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21조의2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1조의2에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반드시 영상물로 촬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은 전문증거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상물의 증거가치가 기존에 주로 활용되던 진술조서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물 촬영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영상물 증거는 주로 나이 어린 피해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경우에 그 활용도 내지 실효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2조의3에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현행법과 같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2조의4에 의하면 법원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심리적 타격 등 이차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적용범위를 제2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는 등 법집행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수정 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性暴力犯罪の處罰및被害者保護等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의화 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정의화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3.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강봉균·강운태·구종태·김영환·김형오·김효석·설송웅·송영길 신기남·이상희·이종걸·임종석·장재식·정동채 의원 발의)

4. 中小企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3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金政夫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대안은 嚴虎聲 의원·趙在煥 의원·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통합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인과 피감사 회사의 유착에 의한 회계 투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감사인을 6년마다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셋째,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조서를 8년간 보존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넷째, 회계부정을 신고 또는 통지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였으며,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편중여신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차주여신한도제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상호저축은행 주식의 30% 이상의 취득을 승인하는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 전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출자자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은행의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자율경영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경과규정을 보완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업무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과 피감사 회사의 유착에 의한 회계 투명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요건에 적용되는 학점이수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독학사의 학점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일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과 공인회계사 수습비용의 지원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株式會社の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개정경제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中小企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개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 만장일치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 만장일치로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은 개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은 개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전부 다 만장일치가 많습니니다.

다음은 제5항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은 개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

법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강재섭·박종근·김만제·이해봉·박승국·손희정·김성조·김찬우·이병석·정창화·박시균·김광원·이원형·안택수·박세환·백승홍·윤영탁·현승일·박창달·이상득·주진우·이인기·임인배·이상배·김일윤·박근혜·신영국·박재욱·권오을·박헌기·이한구·임진출·강신성일 의원 발의)

(14시4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권영세 영등포출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 의원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강재섭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역산업의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연구·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및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출연연법과의 입법 체계상 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에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서 정부의 출연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관리기 본법에서 다른 법률에 정한 정부출연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안 제8조에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의 재원에서 정부의 출연금 을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범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특별법이 기는 하나 현행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의 근 거 법률과 형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안으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 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택수 의원,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8인, 반대 5인, 기권 10 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 조치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해구 의원 발의)(이해구 의원 외 29인 발의)

8.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1.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48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7항 농업·농촌기본 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인삼산업법중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10항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 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5 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張誠源 농림해양수산 위원회의 새천년민주당의 張誠源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한 농업·농촌기본법 중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종자산업 법중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 계농업인’의 명칭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꿈과 아울러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 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며, 농업·농촌정보화시책 지원 사업의 주체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삼제품의 부정유통 근절과 품질관리를 위한 미검사품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제품 등에 관하여 수거·검사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 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품종보호출원 품종에 대한 임 시보호권의 발생 시점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맞도록 출원공개일을 조정하고 종자보증 제도를 보완하여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품종보호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심판장의 보정권을 유지시키고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수립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비포장 상태로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할 경우 보증표의 교부를 의무화하며, 비료품질 검사 결과 불량 비료의 판매중지 등의 처분을 명하는 기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료업자의 범위에서 비료수출업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들의 용어도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개정안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선박 소유주의 보상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제협약을 개정하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동 협약에 따라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 발효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만장일치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명, 반대 2인으로서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 만장일치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5시0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代理 尹漢道 건설교통위원회 尹漢道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해봉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과 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의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을 위한 교통 SOC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철도 관련 예산이 연간 8000억 내지 1조 원에 이르는 등 예산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 관련 부분을 독립된 도시철도계정으로 분리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지원과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 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2004년 1월1일부터 공항운영자의 수입으로 환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한 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代案)

(건설교통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7인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國軍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15시0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3항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창복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이창복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과견연장동의안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2003년 11월 6일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11월 10일 제243회 정기국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31일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20명의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의 파견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서부사하라에 파견된 우리 국군의료부대는 현지 평화유지단의 유일한 의료부대로서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하여 현지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사령관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의료부대의 파견이 1994년 이래 9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적대행위와 교전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고, 연간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도 사후에 유엔을 통해 85%가량 보전되기 때문에 과견연장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 온 우리 국군의료부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부대의 과견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과견연장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5시1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4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윤경식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청주홍덕 출신 국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사의 물리적·공간적 이전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이며 국민적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범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및 정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元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元 議員** 신행정수도 문제는 우리나라 장래의 드림 맵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당인지 4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무끼리 합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가지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의장님께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국회가 전문화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안을 총무끼리 합의해 가지고 바로 특별위원회 만들겠다고 가져간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배경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 전부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집국장 회의인가에서도 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선거 때 행정수도 꺼내 가지고 저속하게 이야기하면 장사 재미 좀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사 재미 좀 봤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월 선거를 앞두고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소위 민족 장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행정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에 휩싸여서 특위를 만든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될 일입니까? 총무들끼리 합의만 하면 소관 상임위도 없고 법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라면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특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 어려우니 특별위원회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명 한번 못 들었어요. 당론인지 뭐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의 뜻을 전혀 존중해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특위로 가져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 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특위 구성을 반대하고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찬성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방금 존경하는 金光元 의원께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이 법안이 현재 건교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왜 4당 총무들만의 합의에 의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냐,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건교위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특위를 만들기 전에 어떤 상임위에 해당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의장께서 이 법안을 배당할 때 결국 건교위로 넘기신 것인데 비단 건교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자치위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문제는 건교위나 행자위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경제·사회 종합적인 시설의 이전이고 국민적인 큰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4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원들은 개인적인 자격에 의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그당을 대표한 4당 총무들이 하등의 이의 없이 합의해서 특위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각 당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총무들이 합의한 것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하등의 이의 없이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교위에서 다루지 않고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논리의 전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서 특위에서 4당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그와 같은 정치성을 배제하는 데도 오히려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중대사 업무이고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올림픽에 관한 문제 또 월드컵에 관한 문제 또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은 국가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당 총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당론을 존중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찬성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지금 찬반에 관한 설명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발언 순서이신 李完九 의원은 아마 찬성하실 것 같은데 반대도 없는 마당인데,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합의를 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의사를 본회의장에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23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議長 朴寬用 그리고 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동료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해요, 조용히!

본회의장이 이게 됩니까?

나가요.

발언하십시오.

○李柱榮 議員 경남 창원 출신 한나라당 李柱榮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특별검사법의 공포 시행이 늦어지면서,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정국 불안 염려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우리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당의 중요한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셔서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거나 옳게 수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고, 특히 권력 주변 의혹, 대통령 친인척, 측근,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통솔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설특검까지 주장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는 어쩌면 자신에게까지 수사의 범위가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특검을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실 일이 있는지 아직도 공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를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국회에서 의결해 보낸 법률안이 그 내용으로 볼 때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국가이익에 반한다든가, 그 내용 중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또는 그 내용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이권 거부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위헌이라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盧武鉉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 회의라든지 법사위 회의라든지 여러 곳곳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또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비껴 갔던 전력—그전에 나라종금 사건에서 안희정에 대해 수사할 때 盧武鉉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에 대한 사건인데 안희정의 정치자금으로 축소 수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껴 갔던 사실이 현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정국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특검법 거부로 인해서 정국이 더욱 어두워져 우리나라 살림에 더 주름살이 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

고 민생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대통령이 이 법을 조속히 공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위도방폐시설 조사위원으로 현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핵폐기장백지화부안주민대책위원 구성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매일 밤 8시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촛불집회를 한, 그러한 집회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부안 지역 모든 집회·시위를 주최해 온 부안주민대책위에 대한 엄중하고 어처구니없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불법폭력시위 가담자 및 주동자 배후세력에 대한 추적 검거 및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어디 배후세력이 있겠습니까?

광주 5·18사태에서 배후세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광주주민들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직시하면서 부안에도 마찬가지로 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함께 경찰력을 대폭 투입을 했습니다. 핵폐기장백지화부안주민대책위는 당혹감 속에서도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주민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와 부안 측 대화기구가 결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부안군민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대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주민투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한 것은 원천무효 백지화를 주

장해 온 군민으로서는 큰 양보를 한 것으로 불안 사태를 볼 수 있고 또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高建 총리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이라고 밝히는 반면 청와대 일부 인사는 총리의 견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 정책 내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혼선을 보여 주는 등 불안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하여 실망스러운 모습을 불안군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모 중앙일간지에 정부 측 입장만 강변하는 하단광고를 실어 대화 중단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광고를 어떠한 예산에 근거해서 낼 수 있었는지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7만 5000여 명이 평화롭게 살던 불안군에 8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전시시국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대단히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한편 어제 TV뉴스에서는 군민 1명을 10명의 전투경찰이 에워싸고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신문은 불안사태를 민란이나 계엄 수준으로 표현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5·18군사광주사태를 몸소 체험한 본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군사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광주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어떻게 이런 폭력진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과잉폭력진압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민주적 절차로 즉각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불안사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권위는 폭력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진실로만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실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정당하고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다음은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갑 출신 신기남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1990년도에 추석연휴를 하루 늘리면서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된 이후에 시대 역행적인 그 처사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왔고 나아가 한글날을 지위를 격상시켜서 국경일로 지정하는 범국민 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인 2000년 9월 29일 여야 의원 33명이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08명의 의원이 뒤따라서 찬성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7명의 의원은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까지 만들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16대 국회가 거의 끝나 가는 지금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글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6%, 그리고 인터넷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가 국경일 지정을 찬성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서 세계의 석학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맥콜리 교수나 라이샤워 교수 같은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이 한글날은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 고유문화가 세계사 속에서 찬연히 빛날 수 있었고, 그 문화 속에서 독자적인 민족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제일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날을 문화국경일로 기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휴일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를 계기로 휴일·휴가제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일·공휴일·기념일까지 총괄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문화의 창건일로서 정부 수립일을 비롯한 여타의 국경일에 비해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이 한글날이 반드시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 특히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행정관료와는 또 다른 대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 문화국경일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휴일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맙니다.

문화국경일을 만드는 일에 흔쾌하게 결단을 내림으로써 16대국회의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자교육진흥법안이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자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기본어문정책인 한글 전용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어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조차 없는 이 상태에서 한자교육진흥법이 먼저 제정되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올 4월 정부가 국어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지금 각지를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자 여기에 맞불용으로 한자교육진흥법을 낸 것이 아니냐,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국회에 불쑥 제출한 것이 아니냐—문화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의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 정부부처와 협의도 없었고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이 미쳐지고 그리고 우리 문화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이 한자교육진흥법 제정, 우선 신중한 여론수렴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문정책의 틀 속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우리나라 어문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논의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실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정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범구 의원 경기 고양 일산갑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저는 15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장께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발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돌아보실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께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이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던 데 반해서 아직도 상당수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206건의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및 청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중 80건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법사위를 일컬어 “이것이 우리 국회의 상원이나”는 비판과 항의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술한 미처리 법안 중에서 특히 1개의 법안에 대해 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공동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1년 10월 30일에 발의되어서 동년 11월 15일에 법사위 제1소위로 넘겨진 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은 특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한국의 대표적 종교단체 대표들이 일일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하게 한 그런 법안입니다.

이 종교단체 대표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은 “왜 국회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이 법안 취지에 찬동해서 공동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법사위는 이 155명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장께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朴寬用 의장께서도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이십

니다. 이 법안은 각 정당의 당리당락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법사위가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소신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가부간의 분명한 응답을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장께서 이 법률안을 직권상정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미리 그 심사기간을 정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 회부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위원회가 이 법률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의장께서 이 안건을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노력을 인정해 주는 열린 국회,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우리 정범구 의원의 그 열정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정신에, 제85조는 기한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법사위로 하여금 빨리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구의 심재철입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3당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매우 가까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생산성은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비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 수를 26명이나 늘리겠다는 정개특위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현재처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정치가 도대체 의원 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꼴입니까?

지난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국회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숫자를 299명에서 지금의 27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비록 환란은 극복했다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나아졌다고 다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입니까? 1인당 GDP가 1만 불에서 8년째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가 도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입니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는 일인지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할 뿐 국민복과는 별 상관도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의원 숫자 늘리기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9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결의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3. 11.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현재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바, 행정수도이전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국민적 합의도출을 요하는 국가적 중대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고, 정책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국가적 중추시설의 공간적 이동뿐 아니라,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국민적 관심 또한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률안 및 정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동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7인)

찬성의원(186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학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원 웅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필
김 중 하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석 찬	송 영 진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상 수	안 상 현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세 훈	원 유 철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훈 평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창 화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재 환	조정 무	주 진 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용 규
하 순 봉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기권의원(1인)**

심 규 철

(이방호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의원 186인, 기권의원 1인임)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92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필	김 중 하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신
남 궁 석	김 효 석	나 오 연	남 경 필
문 석 호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박 명 환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승 국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세 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김윤식	김일운	김정부	김정숙
박재욱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김종필	김종하	김충조	김태홍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헌기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박병석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륜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박주선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훈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근진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심재권	심재철	안경륜	안대륜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근진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정철기	조부영	조재환	조정무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조희욱	주진우	천정배	최명현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재환	조정무
				조희욱	주진우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92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운용	김원길

○中小企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6인)

찬성의원(196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완 박종우 박중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재환 조정무  
 조희욱 주진우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윤두환·이재오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  
 의원 196인, 찬성의원 196인임)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6인)

찬성의원(193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병운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중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재환 조정무  
 조희욱 주진우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함승희

이창복 임진출 장태완 전재희 정병국 정장선 조재환 천정배 최연희 함승희 홍사덕 황창주  
 이해구 임태희 전갑길 정갑윤 정세균 정창화 조정무 최명현 최영희 허태열 홍재형  
 이훈평 장광근 전용원 정동채 정우택 정철기 조희욱 최병국 최용규 현경대 홍준표  
 임인배 장성원 전용학 정문화 정의화 조부영 주진우 최선영 함석재 홍문종 황우여

**반대의원(2인)**

구종태 김영선

**기권의원(1인)**

정범구

안상현 오세훈 유용태 윤경식 윤한도 이근진 이상희 이연숙 이윤수 이재오 이해구 임진출 장태완 전재희 정세균 정창화 주진우 최선영 허태열 홍준표  
 안영근 원유철 유재건 윤두환 이강두 이만섭 이성현 이완구 이인기 이재창 이훈평 임태희 전갑길 정동채 정우택 조부영 천정배 최명현 최용규 홍문종 황우여  
 안택수 원희룡 유재규 윤여준 이경제 이방호 이승철 이원창 이인제 이주영 이훈평 임인배 장광근 전용원 정병국 정장선 조희욱 최병국 하순봉 홍재형  
 엄호성 유시민 유홍수 윤철상 이규택 이상배 이양희 이원형 이재선 이창복 임인배 장성원 전용학 정병국 정장선 조희욱 최병국 하순봉 홍재형

**반대의원(5인)**

배기운 조재환 남궁석 이강래 함승희 송석찬 정갑윤 정철기 문석호 이정일 정범구 박병석 서상섭 최영희

**기권의원(10인)**

문석호 박병석 정범구 박병석 서상섭 이정일 정범구 최영희 황창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안**

**투표의원(193인)**

**찬성의원(178인)**

강봉균 강인섭 구종태 권태망 김기배 김덕배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원길 김정숙 김태홍 김홍신 남경필 민봉기 박병윤 박시균 박종근 박종희 박혁규 서병수 손희정 신경식 신현태 안경률  
 강성구 강재섭 권기술 김경제 김기재 김동욱 김문수 김성호 김용균 김윤식 김종필 김택기 김황식 도종이 박관용 박상희 박원홍 박종완 박주선 박희태 서정화 송광호 신계륜 심규철 안대륜  
 강숙자 고진부 권영세 김광원 김덕규 김만제 김부겸 김영선 김용학 김일윤 김종하 김학송 김효석 맹형규 박근혜 박세환 박인상 박종우 박주천 배기선 서청원 송영진 신기남 심재권 안동선  
 강신성일 고홍길 권철현 김근태 김덕룡 김명섭 김성순 김옥두 김운용 김정부 김충조 김학원 나오연 목요상 박명환 박승국 박재욱 박종웅 박헌기 백승홍 설훈석 신영국 심재철 안상수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91인)**

강봉균 강인섭 구종태 권태망 김근태 김덕룡 김명섭 김성순 김옥두 김운용 김정부 김충조 김학원 나오연 남궁석 강성구 강재섭 권기술 김경제 김기배 김덕배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원길 김정숙 김태홍 김홍신 김황식 도종이 박관용 박상희 박원홍 박종완 박주선 박희태 서정화 송광호 신계륜 심규철 안대륜  
 강숙자 고진부 권영세 김경천 김기재 김동욱 김문수 김성호 김용균 김윤식 김종필 김학송 김효석 맹형규 박근혜 박세환 박인상 박종우 박주천 배기선 서청원 송영진 신기남 심재권 안동선  
 강신성일 고홍길 권철현 김광원 김덕규 김만제 김부겸 김영선 김용학 김일윤 김종하 김학송 김효석 맹형규 박근혜 박세환 박인상 박종우 박주천 배기선 서청원 송영진 신기남 심재권 안동선

도종이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김운용	김윤식	김일운	김정부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충조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헌기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목요상	박명환	박병석	박관용
설훈석	신경식	송광호	송석찬	박근혜	박세환	박승국	박병윤
송훈석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박상희	박인상	박재욱	박시균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박원홍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심재철	안정률	안대륜	안동선	박종완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박주선	박희태	배기운	백승홍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박희태	배기선	서정화	설훈석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서병수	서상섭	송석찬	송훈석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훈석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이강래	이근진	이만섭	이방호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이상배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안정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우재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이인기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이해봉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근진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이만섭	이방호	이상배	이상희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이성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조재환	조정무	조희욱	천정배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훈평
최명현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임인배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재환	조정무	조희욱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89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반대의원(1인)

정세균

기권의원(1인)

유용태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5인)

찬성의원(193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속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욱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훈	손 희 정	송 석 찬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대 룡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엄 호 성	오 세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만 섭	이 방 호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훈 평	임 인 배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희 욱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하 순 봉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2인)

김 광 원 송 광 호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9인)

찬성의원(188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속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욱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훈
손 희 정	송 석 찬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대 룡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엄 호 성	오 세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만 섭	이 방 호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훈 평	임 인 배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훈 평 임 인 배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희 육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하 순 봉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기권의원(1인)**  
 전 용 학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엄 호 성 오 세 훈 원 유 철  
 원 희 룬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만 섭 이 방 호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훈 평 임 인 배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희 육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하 순 봉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92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덕 규  
 김 덕 룬 김 덕 배 김 동 육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중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옥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응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석 찬 송 훈 석 신 경 식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89인)**

**찬성의원(182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흥 길 권 기술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덕 룬 김 광 원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부 겸 김 명 섭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성 순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중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일운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김종호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김학송	김학원	김홍신	김황식
서정화	설훈	손희정	송광호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송석찬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세환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배기선	서병수	서정화	설훈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훈석
이강래	이경제	이규택	이근진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이만섭	이방호	이상배	이상희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이재창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이해봉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이근진	이만섭	이방호	이상배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정형근	조부영	조재환	조정무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조희욱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최용규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이해구	이해봉	이훈평	임인배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황우여	황창주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반대의원(7인)**

고진부	구종태	심재권	이정일
정철기	최선영	최영희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투표의원(182인)**

**찬성의원(179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윤식	김일운
김종필	김종하
김태홍	김택기
김홍신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근혜
박상희	박세환
박원홍	박재욱
박종웅	박종희
박혁규	박희태
서정화	설훈
송석찬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심재권	심재철
안동선	안상수
안택수	엄호성
유시민	유용태
유한열	유홍수
윤여준	윤철상
이강래	이경제
이방호	이상배
이승철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인제	이재선
이주영	이창복
이훈평	임인배
장성원	장태완
전용학	전재희
정몽준	정문화
정우택	정의화
정철기	정형근
조정무	조희욱
최선영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홍문종	홍재형
황창주	

**반대의원(2인)**

이규택	이재오
-----	-----

**기권의원(1인)**

서상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179인)**

**찬성의원(84인)**

강 봉 균	강 숙 자	강 인 섭	김 경 재
김 덕 규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용 학	김 윤 식	김 중 필	김 중 호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원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문 석 호	박 병 석
박 세 환	박 종 완	박 종 응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설 훈
송 광 호	송 석 찬	송 영 진	신 경 식
신 계 룬	신 기 남	심 규 철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영 근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건	유 한 열	윤 경 식	윤 여 준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형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전 갑 길	전 용 학
정 동 영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조 부 영	조 재 환	조 희 욱	천 정 배
최 용 규	하 순 봉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창 주

**반대의원(70인)**

강 성 구	강 신 성 일	고 흥 길	권 영 세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광 원	김 기 배
김 문 수	김 성 순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운 용	김 원 길	김 진 재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민 봉 기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윤	박 상 희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우	박 종 희	박 주 천	박 혁 규
서 상 섭	서 정 화	송 훈 석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동 선	엄 호 성	오 세 훈
유 용 태	유 재 규	윤 두 환	이 규 택
이 방 호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현
이 윤 수	이 재 창	이 해 봉	이 훈 평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용 원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창 화	정 형 근
조정 무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영 희	홍 문 중		

**기권의원(25인)**

고 진 부	구 종 태	김 경 천	김 덕 룡
김 정 부	김 충 조	김 학 송	박 관 용
박 승 국	박 현 기	손 희 정	신 현 태
심 재 권	안 택 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원 창	이 정 일	장 재 식	전 재 희
정 범 구	정 철 기	최 연 희	홍 준 표
황 우 여			

**○出席議員(224人)**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 신 성 일
姜 仁 燮	강 재 섭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高 권 영	高 權 哲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김 근 태	金 杞 培	김 기 재	김 덕 규
金 德 龍	김 덕 배	金 東 旭	김 만 제
김 명 섭	金 武 星	金 文 洙	김 부 겸
金 聖 順	김 성 조	김 성 호	金 映 宣
김 영 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雲 龍	金 元 吉	김 원 응
金 允 式	김 일 윤	金 政 夫	김 정 숙
金 鍾 泌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忠 兆	김 태 홍	金 택 기	金 鶴 松
金 學 元	김 흥 신	金 晃 植	金 孝 錫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都 鍾 伊	孟 亨 奎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朴 寬 用	朴 權 惠	朴 明 煥
박 병 석	박 병 윤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承 國	박 시 균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鍾 浣
朴 宗 雨	朴 鍾 雄	박 중 희	朴 柱 宣
朴 柱 千	朴 憲 基	박 혁 규	朴 燻 太
배 기 선	裴 奇 雲	白 承 弘	서 병
서 상 섭	徐 廷 和	徐 淸 源	薛 勳
손 희 정	송 광 호	송 석 찬	송 영 진
송 훈 석	辛 卿 植	신 계 룬	신 기 남
申 榮 國	申 榮 均	신 현 태	심 규 철
沈 載 權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대 룬
安 東 善	安 商 守	安 相 賢	안 영 근
안 택 수	安 梁 圭	嚴 虎 聲	오 경 훈
오 세 훈	元 裕 哲	嚴 원 희	유 시 민
劉 容 泰	유 재 건	柳 在 珪	柳 漢 烈
柳 尹 鐵	尹 漢 道	李 康 斗	이 강 래
李 敬 在	李 方 鎬	李 根 鎭	이 낙 연
李 萬 燮	李 祥 義	이 부 영	이 상 득
李 相 熙	李 嫵 淑	이 성 현	이 승 철
李 元 昌	李 元 在	李 允 洙	이 우 재
이 인 제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昌



李正一 李柱榮 이창복 李漢久  
 李海龜 이해봉 이해찬 李協  
 李訓平 이희규 林仁培 林鎭出  
 임채정 任太熙 張光根 張誠源  
 장영달 張在植 張泰玩 全甲吉  
 田塔源 田 용 학 田 재 희 鄭갑윤  
 정동영 鄭동채 鄭몽준 鄭문화  
 정범구 鄭병국 鄭세균 鄭宇澤  
 정의화 鄭장선 鄭창화 鄭哲基  
 鄭亨根 趙富英 趙舜衡 趙在煥  
 조정무 趙漢天 曹喜旭 朱鎭盱  
 친정배 崔明憲 崔炳國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崔용규 河舜鳳  
 韓昇洙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泰烈 玄敬大 洪문중 洪思德  
 홍재형 洪準杓 黃우여 黃昌柱

○出張議員(4人)

姜昌熙 송영길 鄭鎭碩 韓忠洙

○請暇議員(21人)

姜雲太 權五乙 金淇春 김락기  
 金秉浩 金台植 金형오 김홍일  
 오장섭 尹榮卓 이병석 이상수  
 李龍三 이원성 李允盛 이종걸  
 李漢東 이호웅 조성준 曹雄奎  
 秋美愛

○出席國務委員

부총리 겸 金 振 杓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康 錦 實  
 농림부장관 許 祥 萬  
 건설교통부장관 崔 鍾 璨  
 해양수산부장관 張 丞 环

○出席政府委員

외교통상부차관 金 在 燮  
 과학기술부차관 權 五 甲

【報告事項】

○特別委員長選任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섭  
 (11월17일)

○特別委員選任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강인섭 송광호 서상섭 엄호성  
 이원형 이승철 정병국

새천년민주당  
 윤철상 배기운 이낙연  
 열린우리당  
 김원웅 김희선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안대륜  
 (11월14일)

○幹事選任

위 원 회	위 원 명	교섭단체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	송광호	한나라당
	윤철상	새천년민주당
	김희선	열린우리당

(11월17일)

○常任委員辭任및補任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최재승	정 무	문화관광	새천년민주당
정범구	문화관광	정 무	새천년민주당

(11월12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운영	정범구	안상현	새천년민주당
여성	정범구	안상현	새천년민주당

(11월12일)

○特別委員辭任및補任

위 원 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정치개혁특별	정범구	황창주	새천년민주당

(11월12일)

위 원 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강인섭	이주영	한나라당

(11월17일)

○交渉團體名變更

변경 전 교섭단체 명	변경 후 교섭단체 명
열린우리당 주비위원회	열린우리당

(11월17일)

○交渉團體所屬議員除籍

새천년민주당  
 정범구  
 (11월12일)

○議案提出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

(11월10일 정부 제출)

11월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이종걸·임종석·이강래·이희규·강봉균·김희선·송영길·신기남·정동영·김명섭·최용규 의원 발의)

11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유시민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유시민·김부겸·임채정·천정배·신기남·김홍신·김원웅·김희선·이창복·안영근·조성준·김성순 의원 발의)

11월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김경천·권철현·권태망·박재욱·엄호성·윤경식·이경재·이규택·이재오·전용학·주진우·황우여 의원 발의)

11월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대륜 의원 발의)

(11월11일 안대륜 의원 외 20인 발의)

11월12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임인배·정갑윤·김정부·홍준표·이근진·손희정·백승홍·박혁규·오세훈·홍문종·이상득·황우여·임진출 의원 발의)

11월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放送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심재권·고홍길·신기남·김옥두·김운용·이재오·김성순·유재건·이창복·김영환·권기술·황우여 의원 발의)

11월1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김경천·권철현·김일윤·박창달·백승홍·윤영탁·이규택·이원형·이재오·최영희 의원 발의)

11월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신계륜·이원성·조배숙·김덕규·이희규·이종걸·황우여·송영길·유시민·최재승·임종석·박인상 의원 발의)

11월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

(11월12일 윤영탁 의원 외 9인 발의)

11월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대표발의)

(11월13일 목요상·김기배·김문수·김부겸·김옥두·김원기·김학송·안동선·양정규·이규택·이용삼·이원성·이정일·이창복·이해구·장성원·정우택·정창화·최연희·함석재·홍문종 의원 발의)

11월14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11월13일 전재희·손희정·오세훈·이정일·장광근·이연숙·박헌기·김락기·이규택·박상희·정창화·이호웅·이승철·홍사덕·홍문종 의원 발의)

11월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박근혜·오세훈·권영세·최병렬·박진·남궁석·홍문종·박세환·박헌기·강재섭·조한천·김진재·이상희·박상희·김희선·박종완·이성현 의원 발의)

11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김정부·전용학·김황식·장광근·김종하·박명환·오세훈·김정숙·이강래·윤한도·권태망 의원 발의)

11월1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11월17일 정범구 의원 외 14인 발의)

11월17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11월17일 정범구·김희선·조성준·김홍신·조한천·김성호·임종석·김경천·김부겸·정병국·김경재·강운태·고진부·김영환·한화갑·박명환·박인상·이부영·추미애 의원 발의)

11월1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1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先物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17일 정부 제출)

11월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이상 3건 11월1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한·독수교120주년기념양국우호협력증진결의안**

(11월19일 한화갑·김홍신·조한천·배기운·박근혜·김정부·이강래·이낙연·강인섭·이훈평·나오연·김성호·이해찬·김희선·문석호·조응규·이창복·김용갑·김상현·유홍수·김운용·이부영·하순봉·이인제·정대철 의원 발의)

11월1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경천·김상현·김홍신·김황식·손희정·이양희·이훈평·장성원·정범구·조배숙·최명헌·최영희 의원 발의)

11월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경천·김상현·김홍신·김황식·손희정·이양희·이훈평·장성원·정범구·조배숙·최명헌·최영희 의원 발의)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경천·김상현·김홍신·김황식·손희정·이양희·이훈평·장성원·정범구·조배숙·최명헌·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김경천·김상현·김홍신·김황식·손희정·이양희·이훈평·장성원·정범구·조배숙·최명헌·최영희 의원 발의)

11월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11월19일 이상희·박헌기·이인기·박명환·박재욱·이성현·박근혜·최선영·유한열·권기술·하순봉·심재권 의원 발의)

11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20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20일 김경천·김상현·김홍신·김황식·손희정·이양희·이훈평·정범구·조배숙·최명헌·최영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11월20일 김경천·김상현·김홍신·김황식·손희정·이양희·이훈평·장성원·정범구·조배숙·최명헌·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박시균 의원 발의)**

(11월20일 박시균 의원 외 20인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화폐기본법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11월20일 이완구·강창희·이성현·신경식·이재선·김황식·이인기·유한열·엄호성·정병국·박재욱·김원웅·문석호·전용학·김홍신·이우재·유홍수·김정부 의원 발의)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11월20일 이완구·강창희·이성현·신경식·이재선·김황식·이인기·유한열·엄호성·정병국·박재욱·정의화·문석호·전용학·김홍신·이우재·유홍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自然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11월20일 김학송·김택기·박인상·조재환·조응규·임인배·신영균·유한열·강성구·양정규·배기운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21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외동포기본법안에대한수정안**

(11월18일 조응규·원희룡·김상현·김덕룡·장재식·유재건·이인제·신현대·김용학·서청원·이재선·이인기·이원형·임인배·김윤식·안경률·박승국·이정일·권철현·이용삼·박명환·박희태·강창성·최병렬·양정규·이한동·박세환·한승수·이성현·김운용·홍문중 의원 발의)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11월19일 조응규·이부영·원희룡·김상현·박종희·이상수·김덕룡·정동영·장재식·유재건·이인제·윤두환·신현대·김황식·김영환·강운태·김용학·김명섭·박시균

유시민 · 서청원 · 김찬우 · 전갑길 · 최용규 · 이희규 · 박희태 · 강창성 · 최병렬 · 이훈평 · 조성준 · 최선영 · 박승국 · 김옥두 · 홍재형 · 이정일 · 설훈 · 김성호 · 이용삼 · 박명환 · 김효석 · 박상규 · 이재선 · 이인기 · 최영희 조재환 · 이원형 · 임인배 · 김윤식 · 김성순 · 김택기 · 배기운 · 임채정 · 송석찬 · 박상희 · 김종호 · 홍문중 · 한승수 · 김운용 · 유용태 · 송영진 · 양정규 · 이한동 · 박세환 · 김희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건**

(11월21일 의장 제의)

11월22일 (8일간)  
11월29일

**○議案審査**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8월27일 이경재 · 강창희 · 권영세 · 권철현 · 권태망 · 김부겸 · 김성조 · 김영선 · 김정부 · 김정숙 · 김종하 · 김학송 · 김형오 · 맹형규 · 박명환 · 박세환 · 박승국 · 박시균 · 박주천 · 박창달 · 배기운 · 심규철 · 심재권 · 심재철 · 안경률 · 양정규 · 엄호성 · 오세훈 · 윤한도 · 이낙연 · 이승철 · 이윤성 · 이재오 · 이주영 · 이창복 · 장성원 · 정병국 · 주진우 · 하순봉 · 허운나 · 허태열 · 서상섭 · 박진 · 김성호 · 장광근 · 김광원 · 이성현 · 강인섭 · 김희선 · 이규택 · 박인상 · 민봉기 의원 발의)

(수정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中小企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7월29일 정부 제출)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7월22일 정동영 · 강봉균 · 강운태 · 구종태 · 김영환 · 김형오 · 김효석 · 설송웅 · 송영길 · 신기남 · 이상희 · 이종걸 · 임종석 · 장재식 · 정동채 의원 발의)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6월19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의결)

이상 3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안(강**

**재섭 의원 대표발의)**

(4월23일 강재섭 · 박종근 · 김만제 · 이해봉 · 박승국 · 손희정 · 김성조 · 김찬우 · 이병석 · 정창화 · 박시균 · 김광원 · 이원형 · 안택수 · 박세환 · 백승홍 · 윤영탁 · 현승일 · 박창달 · 이상득 · 주진우 · 이인기 · 임인배 · 이상배 · 김일윤 · 박근혜 · 신영국 · 박재욱 · 권오을 · 박헌기 · 이한구 · 임진출 · 강신성일 의원 발의)

(수정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

(7월2일 정부 제출)

**農業 · 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해구 의원 발의)**

(7월24일 이해구 의원 외 29인 발의)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7월2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의결)

**種子産業法中改正法律案**

(7월29일 정부 제출)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

(9월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의결)

이상 5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

(11월6일 정부 제출)

(원안의결)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윤한도 의원 대표발의)**

(9월4일 윤한도 · 김광원 · 이방호 · 권오을 · 엄호성 · 안택수 · 하순봉 · 김정숙 · 윤경식 · 박희태 · 안상수 · 도종이 · 김황식 · 이해봉 · 안경률 · 임인배 · 이호웅 · 송광호 의원 발의)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8월29일 신계륜 · 이호웅 · 김용학 · 유시민 · 정병국 · 이재오 · 오영식 · 김덕규 · 허운나 · 이윤성 · 이미경 · 권기술 · 민봉기 · 안상수 · 심재권 · 강봉균 · 박양수 · 서병수 · 박인상 · 김근태 · 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2년10월29일 엄호성 · 권태망 · 김문수 ·

김병호 · 김부겸 · 김정숙 · 김진재 · 박주천 · 손희정 · 신영균 · 안경률 · 안택수 · 이상희 · 이성현 · 전용원 · 정의화 · 주진우 · 하순봉 · 황우여 · 김홍신 · 강재섭 의원 발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재환 의원 대표발의)**

(5월10일 조재환 · 김부겸 · 장태완 · 천정배 · 박주천 · 서병수 · 박양수 · 전갑길 · 김성순 · 오영식 · 김윤식 · 조웅규 · 최영희 · 송석찬 · 이훈평 · 장성원 · 최선영 · 김경재 · 이용삼 · 심재권 · 서상섭 의원 발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5월27일 박병석 · 조재환 · 정동채 · 이성현 · 송석찬 · 유시민 · 김원길 · 김상현 · 이훈평 · 박주선 의원 발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0월18일 이종걸 · 박상규 · 신기남 · 송영길 · 정동영 · 유시민 · 임종석 · 김황식 · 유재건 · 허운나 · 김희선 · 이강래 · 정장선 · 이재정 · 천정배 · 김태홍 · 김영춘 · 김부겸 · 김원기 · 정동채 · 임채정 · 남궁석 · 이호웅 · 정대철 · 이원성 · 김명섭 · 안영근 · 천용택 · 전갑길 · 이창복 · 김근태 · 송영진 · 강봉균 · 김덕규 · 이희규 · 김덕배 · 조배숙 · 이부영 · 이미경 · 장영달 · 송석찬 · 정세균 · 이우재 · 배기선 · 홍재형 의원 발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6월19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이상 7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7월31일 이해봉 · 강재섭 · 김만제 · 박종근 · 박세환 · 윤영탁 · 이원형 · 안택수 · 손희정 · 백승홍 · 현승일 · 박승국 · 박근혜 · 박명환 · 박창달 · 강신성일 의원 발의)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윤한도 의원 대표발의)**

(9월4일 윤한도 · 김광원 · 이방호 · 권오을 · 엄호성 · 안택수 · 하순봉 · 김정숙 · 윤경식 · 박희태 · 안상수 · 도종이 · 김황식 · 이희규 · 안경률 · 임인배 · 이호웅 · 송광호 의원 발의)

**交通施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10월14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이상 3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議案撤回

**水道法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

(9월5일 박승국 · 임인배 · 이상배 · 김광원 · 이경재 · 김찬우 · 이상득 · 도종이 · 박시균 · 김정숙 의원 발의)

11월7일 발의자 철회요구

○請願提出

**2004년도F-15K구입예산삭감에관한청원**

(2003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문규현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서남하수처리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청원**

(2003년11월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양천길 546) 주민협의체 환경개선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석준 외 4274인으로부터 김성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94 창곡빌딩 201호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석준 외 5인으로부터 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지하철출입구추가설치에관한청원**

(2003년11월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812 지하철반포본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석현 외 56인으로부터 박원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임대주택법개정방향에관한청원**

(2003년11월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대표 김중수 외 14인으로부터 이희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9-1(효창공원 내)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안필준 외 45만 2258인으로부터 이재오 의원

의 소개로 제출)

11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술사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과충신관 903호) 한국기술사회 회장 황상모 외 2136인 안동선 의원 외 7인의 소개로 제출)

11월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등에관한청원**

(2003년11월18일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69-30 박완순 외 3148인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

(2003년11월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428-4 401호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출수 외 1452인으로부터 김희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성매대근절을위한성매매집결지폐쇄에관한청원**

(2003년11월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1동 200-3 김명연 외 1만 224인으로부터 김희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0일 여성위원회에 회부

**서울동부지원및동부지청송파구로의이전에관한청원**

(2003년11월1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62-2 동부지원·지청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낙기 외 15만965인으로부터 맹형규·김성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인상법안반대에관한청원**

(2003년11월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29-4 현대생명빌딩 4층 (사)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 정경수 외 240만3324인으로부터 박시균 의원 외 41인의 소개로 제출)

11월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어업용면세유류납시어선업공급에관한청원**

(2003년11월19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 879-8 서산수협 조합장 김성진으로부터 문석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53-1 조병화로부터 권태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53-1 조병화로부터 권태망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울보호관찰소이전에관한청원**

(2003년11월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2동 264-289 동대문구명문고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종득 외 3809인으로부터 김희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동대문구명문고유치에관한청원**

(2003년11월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2동 264-289 동대문구명문고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종득 외 3809인으로부터 김희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請願審査**

**테러방지법제정반대에관한청원**

(2001년11월28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236 아남아파트 201동 208호 서준식 외 1인으로부터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정보위원장 보고

**○書面質問書提出**

**의료기기기준규격에관한질문서**

(11월12일 김홍신 의원 제출)

11월12일 정부에 이송

**무건리훈련장에관한질문서**

(11월13일 이재창 의원 제출)

**해군성당건립예산에관한질문서**

(11월13일 권영세 의원 제출)

이상 2건 11월13일 정부에 이송

**고속철도정차역에관한질문서**

(11월18일 김용갑 의원 제출)

11월18일 정부에 이송

**등기소건립에관한질문서**

**고속철김천·구미역사건립에관한질문서**

(이상 2건 11월20일 김성조 의원 제출)

이상 2건 11월20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핵에너지정책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모성보호정책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고령사회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편의증진법이관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새마을구미지회교부금지원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비전향장기수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탈북자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7건 11월7일 정부 제출)

**병원학교도입방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11월8일 정부 제출)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전략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  
변서**

**무인교통단속장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판교신도시건설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부동산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공교육내실화방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라크파병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공공의료시설확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국정안정대책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모성보호정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9건 11월10일 정부 제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  
답변서**

**모성보호정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11월12일 정부 제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에관한  
질문서에대한답변서**

(11월13일 정부 제출)

**최도술비리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1월18일 정부 제출)

**서해5도서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  
답변서**

(11월20일 정부 제출)

(이상 2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通知**

**중앙당등록에대한통지**

11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열린  
우리당 중앙당이 등록되었다는 통지가 있었  
음